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88
----------	------

발의연월일 : 2020. 7. 29.

발 의 자 : 신정훈 · 김영배 · 이상현
김수홍 · 김경만 · 이용빈
송영길 · 이수진^배 · 황운하
박영순 · 김영호 · 서동용
이용선 · 김민철 의원
(14인)

제안이유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간접고용이 전 산업 부문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윤추구라는 경제논리 앞에 기업의 책임회피로 인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난 실정임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도급 금지 작업 범위의 확대, 산업구조의 변화 및 각 산업별 특수성, 작업장, 작업환경, 도구, 기계, 설비와 작업과정 등을 고려하여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지도·감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안전보고서 열람 요청(안 제46조제6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사고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과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 인근주민이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시 이에 따르도록 함.

나. 산업재해 발생 은폐에 대한 조치(안 제57조의2 신설)

-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사업주와 사업장을 공개하도록 함.
- 2) 명단공개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은폐정보심의위원회를 둠.

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작업 추가(안 제58조제1항)

도급금지 작업에 발전소, 제철소와 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과 정비 작업,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을 추가함.

라. 유해·위험한 기구등 방호조치의 위반사항 벌칙을 상향(안 제168조제1호 및 제170조제4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위반사항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 중대산업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의 가족, 유족과 피해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2.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근 지역주민

제4장에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의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와 사업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사업주에게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은폐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은폐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와 사업장 등의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은폐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발전소, 제철소와 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 정비 작업
5.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그 밖에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방심의위원회의 정기적인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제168조제1호 중 “제117조제1항”을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70조제4호 중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을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① ~ ⑤ (생략) <u><신설></u></p> <p><u><신설></u></p>	<p>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p> <p>1. 중대산업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의 가족, 유족과 피해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p> <p>2.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근 지역주민</p> <p>제57조의2(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의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와 사업장을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사업주에게 3개월의 기간을 정하</p>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은폐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은폐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와 사업장 등의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은폐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발전소, 제철소와 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 정비 작업

5.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p>2. (생략)</p> <p>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생략)</p> <p>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 제85조제2항·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p> <p>5. ~ 8. (생략)</p>	<p>-----</p> <p>2. (현행과 같음)</p> <p>제170조(벌칙) -----</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65조제1항-----</p> <p>-----</p> <p>-----</p> <p>--</p> <p>5. ~ 8. (현행과 같음)</p>
--	---